

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 - 01296호

시행일자 2023. 5. 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36(2023.5.3.)

3. 최근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23.4.13.~)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엠폭스 대응지침(5판)을 개정하여 배포한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개정된 엠폭스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환자의 자가치료 격리 전환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최근 격리해제(퇴원) 후 증상(점막병변 출혈)이 재발하여 응급실을 통해 재입원하는 사례가 있어, **자가치료 격리 전환 시 점막병변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증상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내를 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치료 격리 대상자 전환 절차>

- ◆ (자가치료 격리) 격리치료 병상 의료진이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감염력 소실(가피탈락 등)까지의 소요기간을 예측하여 필요한 자가치료 격리 기간을 알려주면 보건소와 협의하여 그 기간 동안 자택에서 격리치료
- ※ 자가치료 격리 기간 중 재입원 필요시, 기존 격리치료 병상에 재입원 및 치료 사전 협의 필요

◆ (담당자) 확진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가치료 격리 대상자에게,

- 입원·격리 통지서 통보(서식 5)
- 자가치료 격리 안내문 설명 및 배포(서식 9)
- 자가치료 격리 자가모니터링 양식 배포(서식 10)

◆ (대상자) 보건소장이 격리치료 병상 의료진과 자가치료 격리 허용을 결정한 대상자

※ 격리장소로 자택 내에 단독 사용 방, 화장실 및 세면대가 있는 경우만 자가치료 격리 가능,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숙박업소 등 공공 이용 장소에서 불가

◆ (확진환자 서약) ① 자가치료 격리 동의, ② 자가치료 격리 수칙 철저히 이행, ③ 자가모니터링(본인 증상 관찰) 후, 1일 1회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고

※ 서식 9. 자가치료 격리 안내문, 서식 10. 자가치료 격리 자가모니터링 양식 참조

◆ 자가치료 격리 기간 중 ① 의심증상 발생이나 ② 자가치료 격리 불가 사유 발생 시, 즉시 기존 격리치료 의료기관으로 재입원,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또는 치료의료기관, 1339)로 전화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안내 1부.
3. 관련 서식(서식5 입원·격리통지서, 서식9 자가치료 격리 안내문, 서식10 자가치료 격리 자가모니터링 양식) 각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